

북가좌119안전센터 차고문 교체공사

시 방 서

(건축)

2011. 03.

서울특별시서대문소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북가좌119안전센터 차고문 교체공사

2. 부지개요

- 1) 대지위치 : 북가좌119안전센터 내
- 2) 지역,지구 :
- 3) 대지면적 :

3. 건축개요 (전체)

- 1) 용 도 : 근린공공시설(119안전센터)
- 2) 건축면적 : M^2
- 3) 연 면 적 : M^2
- 4) 건 폐 율 : %
- 5) 용 적 율 : %

4. 공사범위

- 설계도에 표기된 일체공사
- 1) 내.외부마감 : 에폭시라이닝,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마감 등
- 2) 기타마감 : 세라민페인트 마감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없는 모든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서대문소방서 직원으로서 현장담당의 명을 받은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4. 이 의

-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상호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2) 본 공사의 시공중 설계도서상 누락 및 오기가 있을 경우,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도급자부담으로 시공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사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위치,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자 재

(1) 자재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 규격품의 (K.S)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견 본 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한국공업 규격품으로서 계기가 있는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험

자재의 품질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을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어려운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그렇지 못할때는 사진,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피해발생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등의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재료, 시공설비의 정리와 안전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특히 직원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9. 공사사진

공사진척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천연색, 크기 12cm × 9cm 이상)하여 사진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게 하고 준공시 원판(FILM)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급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준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상태, 작업조건, 기타등의 변화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였을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때

11. 관련법규에 의하여 하도급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2. 공사 중 피해대책

본 건물주위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공사중 피해를 입혔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며, 본 건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3. 뒷정리 및 건물인계

(1)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준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준공후의 건물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14. 기 타

본 공사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건설교통부 건축표준 시방에 의함)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 반 사 항

본 지방서를 우선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이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착공에 앞서 하기 내용을 기재하여 종합가설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1) 현장안내, 부근배치도, 도로경계, 점용구획
- 2)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현장출입구, 통행로
- 3) 공사 목적물 배치
- 4)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현장가공 공장의 배치
- 5) 화재방지시설, 안전통로
- 6) 양수설비, 공사용 기계기구의 배치
- 7) 공사용 전력 급배수 설비
- 8) 현장 안전관리 인근 주변주거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

2-2 가 설 재

가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이동식 강관 말비계

외부 공사이므로 이동식 강관 말비계를 설치하여 공사 수행한다.

2-4 재료 둘 곳, 작업장(헛지붕), 가설건물

가) 가설건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 설비로써 아래의 규모 이상으로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대지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감독, 현장사무실을 상기 규모 이내에서 주변의 임대사무실을 이용할수도 있다.

나)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철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구조 및 외관은 감독원과 협의하며 외관은 페인트로 GRAPHIC 발주처, 설계 및 감리사무실 시공자등을 지정 장소에 표기하여야 한다.

2-5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기계, 기구 조종원은 면허증 소지자로 한하며 기계기구는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며 위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6 공사용 각종 설비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동력설비, 용수설비, 통신설비는 충분한 용량으로 관련수속 및 비용은 수급자가 책임 설치하며 이에 따르는 각종 사용료 및 인입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한다.

나) 공사완료시까지 점용하는 도로부분의 설계 및 대관청의 인허가는 물론 도로점용 비용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7 재해방지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낙하물 방지망을 필요시점에 설치하고 안전방안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8 보 양

가)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리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3-1 적용 범위

도료제품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외부 마무리 재료의 미관보호 또는 내후, 내식, 내구성 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2 일반 사항

- (1) 각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 (2) 정별철의 색상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3) 최종 색상이 또는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 (4) 칠하는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된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한다.
- (5) 칠하기 전에 바탕처리를 깨끗이 한 다음 도장한다.
- (6) 각 회수의 칠공사는 검사를 득한 후 다음 횟수의 칠을 해야 한다.
- (7) 표면의 오물을 제거하고 균열이나 구멍부분은 V컷팅하고 콤파운드 충전한다.
- (8) 뿔칠시공은 속도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바탕면이 원하는 질감이 나오도록 한다.
- (9) 제조회사의 특기사항이 없는 한 기온이 5°C이하이거나 35°C이상이거나 가풍시, 다습, 강우시는 시공을 중지한다.
- (10) 가연성 도료의 보관
가연성 재료의 보관은 독립한 창고로써 타시설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곳에 전용 창고를 만들어 “화기엄금”, “칠 창고” 등을 부착하고 관계법령에 정하는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비치한다.

1). 바탕면 준비

- (1) 도장할 표면은 칠 또는 바탕면 준비 작업 이전에 청소하여 이물질 제거한다. 기름, 지방 등 기계 청소하기 이전에 깨끗한 천과 세척용 솔벤트로 먼저 제거한다.
- (2) 세척용 솔벤트는 발화점이 38°C 이상인 유독성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 (3) 청소할 때에 먼지 또는 오염물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도장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못머리 등이 노출된 금속면, 또는 수용성 도료를 칠한 면과 접하고 있는 금속면은 녹 방지할 있는 부식 방지 프라이머로 부분 바탕칠하고 인접면에 사용한 도료와 친화성이 있는 도료를 사용한다.

3-3 낙서방지용페인트, 수성페인트칠(합성수지 에먼존 페인트칠)

(1) 재 료

사 용 부 분	사용 페인트	칠회수	비 고
내부	KSM-5311	2 회	색상은 감독원 지시에 의함
외부	KSM-5311	2 회	색상은 감독원 지시에 의함

(2) 공 법

- ①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리 등은 PUTTY로 뭍히고 완전히 건조된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 ② 도장하고자하는 표면에 철재부분(철근, 못)이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 수성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 후 수성페인트 3회 이상 도장한다.
- ③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면, 모서리, 문틀주위등 ROLER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칠을 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일반사항

- (1) 창호는 도면에 지시된 형태를 따르고, 치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 (2) 각창의 위치, 높이 창호 철물의 종류와 사용개소, 기밀편, 구조상세, 조립방법, 창호의 분류기호를 표시한 시공제작도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 재 료

4.2.1 철제 창호공사

- (1) 기성 창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샷시바의 재질은 KR D6759에 합격한 것으로 KS F45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틀재의 성분은 KS F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단면의 형상 및 수는 KS F4506에 따른다. 이때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용오차 범위는 $\pm 0.5\text{mm}$ 이하로 한다.
- (4) 바람막이, 모막이 및 보조재료와 부속재료는 건설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4.3 특수 창호공사

4.3.1 적 용 범 위

스테인레스 또는 기타 특수철문, 무테문 (강화통유리문), 접문, 행가도아, 차폐문 등

4.3.2 재 료

- (1)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 KS 규격품이 아닌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2) 적용부위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4.3.3 제작 및 설치

제작자 시방에 준하여 제작 및 시공하되 SHOP 도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4.4 창호철물

4.4.1 재료 및 일반사항

- (1) 창호철물은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2) 창호 철물의 종류, 형식, 중별은 도면에 따른다.
- (3) 외부에 사용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되, 스테인리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 한다.
- (4) 철물 부착부분은 견고하게 보강한다.
- (5) 보임부의 마무리는 (연마 마무리 또는 도금 마무리)로 한다.

오버헤드도어(차고출입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인을 얻은 설계도서에 따라 오버헤드도어의 공급 및 설치에 따른 제반 작업과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샘플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규격 및 표준

본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제작자의 표준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한다.

- (1) 판넬 - 3T 2중 FIBER GLASS PANEL(THK 60)
- (2) 축대 - 아연도 스틸
- (3) 트랙
- (4) 드럼
- (5) 스프링
- (6) 나사류
- (7) 전동기

3. 제출서류 및 견본

- (1) 제작상세도면
- (2) 제조업자의 지침서 또는 시방서, 시험성적서

4. 설계조건

(1) 일반사항

- (가) 오버헤드 도어 규격은 당 현장의 개구부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전동기타입으로 제작설치 되어야함.
- (나) 판넬을 포함한 오버헤드도어는 45M/sec이상의 풍압에 견딜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필히 설치전 검토하여야 한다.

(2) 오버헤드도어 사양

(가) 판넬

- 1) 특수유리섬유 (FIBERGLASS)로 제작되며 그 형태는 EMBOSSED 처리된 2중 PANEL로 빛의 전달시 굴절로 인한 그림자가 형성이 되지 않아 작업 및 내부공간 사용에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2) 표면에 UV 코팅 처리하여 변색 억제하고 표면이 광택 처리 한다.
- 3) 판넬과 판넬이 맞물리는 부위는 빗물의 유입 및 기밀성을 높이는 타입으로 도면과 같이 제작 되어야 한다.
- 4) PANEL은 자체공장에서 성형기 및 알루미늄 형재를 갖고 국내생산한 제품을 써야하며 만약 파손시 출동에 지장이 없게 신속히 제작 교체 할수 있어야 한다.

(다) 드럼

드럼의 재료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스프링

스프링의 재료는 고장력 와이어 스프링으로 격납형태 및 중량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 1) 스프링 제작
스프링의 제작은 수동 밸런스 타입에 알맞은 강도와 작동시 변형이 없는 선강을 원통코일로 감아 밸런스를 유지토록 선의 감긴 수량을 계산 후 재단하여 열처리 하여야 한다.

(마) 방풍고무

- 1)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풍우유입을 방지하고 열 및 냉기의 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 2) 바닥 패널고무는 DOOR를 폐쇄시 바닥과의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하고 바닥면과의 공간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설 치

-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어 작업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조사하여야한다. 발견된 부적합한 조건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선을 하여야한다.
- (2) 도어의 부품은 승인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제조업자의 지침서 등에 준하여 설치 되어야한다.

6. 검수방법

- (1) 판넬 : 판넬의 표면 흠집상태
판넬의 휨 상태
판넬의 두께 : 60M/M 기준
45M/SEC 이상 내풍압성적서 첨부여부
- (2) 스프링 : 스프링 부식상태의 여부
- (3) 전동기
- (5) GUIDE RAIL : 하 트랙 및 상트랙 휨 상태 점검
- (6) 모든 부품의 도면에 표시된 규격과의 일체 여부확인

7. 품질보증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전문공사로서 건설 산업 기본법에 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